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9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3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7
3. 유사입법례	7
3. 개별 법률 검토	9
(1) 농어촌정비법	9
(2) 말산업 육성법	11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8
(5) 산림보호법	22
(6) 산림조합법	26
(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0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32
(9) 축산법	36
(10) 한국마사회법	40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0. 8.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

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개정안은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 주요 내용 】

소관	법률 제명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대상
농림축산 식품부 (6건)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공동소관)	환지사
	말산업 육성법	말조련사/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싸움소 주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계열화사업자 임원
	축산법	수정사의 및 가축거래상인
	한국마사회법	마주
산림청 (4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전문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보호법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산림조합법	산림조합 임원

2013년 7월 정신장애인·노인 등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

성년후견인 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받던 것과 달리,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¹⁾을 존중하면서,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 변화 】

종 전		개 정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1) 피성년후견인이 여전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의 범위로 일상생활 능력, 법적결정능력, 재정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종 자격·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여 정비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음.

일괄적으로 용어정비 방식으로 개정된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후견인에 해당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인정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게 되어 개편된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통일된 기준 없이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유사 자격·영업 간 결격사유의 불균형도 발생시키는 측면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개별법상 규정된 실질적 기준을 통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①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사전에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③ 공익 관련성이 높은
직역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전면 삭제할 경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격요건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④ 유사한 직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여부를 각각 검토하기로 함.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2820호, 2020. 08. 07. 제출)은 2020. 09. 16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020. 11. 13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당시 주요 논의사항과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같음.

논의사항	논의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
▪ 자격요건의 중요성, 법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일괄적 용어정리방식의 개정은 부적절	▪ 직무수행능력을 사전확인하거나, 사후에 퇴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

3. 유사입법례

자격시험 등을 두고 있는 다음 표의 직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되어(2021. 4. 20.) 피한정후견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격시험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수단을 갖춘 직무】

법률 제명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대상
농어촌정비법	환지사
말산업 육성법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축산법	수정사의 및 가축거래상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보호법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 관련규정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6. (생략)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② (생략)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4. 개별 법률 검토

(1) 농어촌정비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환지사²⁾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3. (생략)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8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환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자격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농지개량사업 실시에 따른 재산권침해 및 권리관계 등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구획정리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공정한 농지개량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정된 자격(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편, 환지사의 사후퇴출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어촌정비법」 제30조에서는 환지사가 환지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환지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생략).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③ (생략)

제39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말산업 육성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말산업 육성법」 제12조 및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①말조련사 ②장제사 ③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각 급수별(1급~3급)로 요구하는 응시 자격을 갖추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증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말산업 육성법」 제13조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등 중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퇴출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말조련사, 장제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말조련사, 장제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활승마지도사의 경우 장애인의 치료를 지도하는 업무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 관련규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4.(생략)

③ (생략)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 (생략)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1. 응시자격

가. 공통

1) 만 17세 이상인 사람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1급 자격시험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3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규정

2. 자격별 시험과목

자격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필기	마술학(馬術學) 마학(馬學)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裝蹄學)의 장 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말 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 실무	마술 재활승마 실무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증 수단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관련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전문가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 채용 및 배치과정에서도 직무수행능력의 검증이 간접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11조는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두고 있고, 현행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자격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취소 등의 사유 대부분이 부정한 자격증 취득, 자격정지 기간 내 업무수행, 명의사용 자격증대여 금지 위반 등에 관한 것으로 정신적 제약 등에 의한 사후퇴출 수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다만, 산림교육전문가에는 유아숲지도사 등이 포함되는데 유아숲지도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직역으로서 공익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① 현행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등 사유³⁾에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 관련규정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결격사유에 성범죄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 ⑧ (생략)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③ (생략)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④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학위·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력·학위·자격 부여과정에서 사전 직무수행능력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 이 법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일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부적합자의 퇴출이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 관련규정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⑤ ~ ⑧ (생 략)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 1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규정

2. 2급 산림 치유 지 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립가(個人篤林家)
---------------------------------	--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산림보호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나무의사 등(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생략)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21조의7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르면 나무의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 하고, 1차 및 2차로 이루어진 나무의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합격하여야 함.

또한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3년간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이수, 자격시험,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나무의사 등의 직무수행능력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6항은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② 제21조의12 따른 처방전 발급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후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산림보호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 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⑤ (생략)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관련규정**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내용·방법·절차·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 ② (생략)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

※ 관련규정

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생략)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6) 산림조합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산림조합법」 제31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을 선출·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법」 제42조는 임원에게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직무 수행 시 법령·정관 위반 행위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산림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규정은 산림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의 수단 및 사후퇴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산림조합법」

제31조(총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4. (생략)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 10. (생략)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역시 위와 유사한 사유로 2021. 3. 21.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임원·대의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생략)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 8. (생략)

②·③ (생략)

다만, 산림조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및 5대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여전히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제21대국회 및 제22대국회에 결격조항 삭제에 관한 일괄개정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김도읍의원이 제출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제2126344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조합대표권을 가진 임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의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② 조합운
영을 위한 금전차용, 부동산거래 등 법률행위 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제3자와 다양한 법률관계 형성이 필요한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을수 있으며, ③ 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관련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
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새마을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
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싸움소 주인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 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6. (생략) ⑥ ~ ⑧ (생략)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 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싸움소 주인 등록시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싸움소 주인의 성격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큰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4)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

또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업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간접적으로 사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③
(생략)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 7. (생략)

⑤~ ⑧ (생략)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해당 법인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와 함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조의5(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2. ----- ----- -----
<u>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u>가. 피성년후견인</u>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축산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등은 고정사업장 등의 요건을 갖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임원이 피한정후견인 등일 경우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축산계열회사업자의 임원선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회사 등에 해당해야 하고,

법인·회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민법」 제40조·
제43조, 「상법」 제382조·제385조) 해당 절차로 임원의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 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③ (생략)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
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관련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9조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5제2호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실행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5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사후퇴출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 관련규정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에 축산계열화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9) 축산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수정사 및 가축거래상인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타법 제명 변경사항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u>정신보건법</u> 」 제3조제1호에 따른 <u>정신질환자</u>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피성년후견인</u> 2.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1호에 따른 <u>정신질환자</u> . ---- ----- <u>제외한다</u>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축산법」 제12조제1항 및 「축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수정사의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수정사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인 경우를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적 통제 수단도 갖춘 것으로 보임.

한편, 같은 법 제33조의2·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축산관련법령, 축산방역·질병, 축산차량 등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2년에 1회이상의 보수교육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해당 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수정사와 가축거래상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그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 략)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3.~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 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4.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과목	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축산차량 등록요령	2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계	6	

6.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총 4시간

과목	시간	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계	4	

(10) 한국마사회법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마주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9. (생략) ③ ~ ⑤ (생략)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 피성년후견인</u>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 하도록 하면서, 피한정후견인 등인 경우는 마주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마주로서의 직무능력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마주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거나 대체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해야 할 정도로 공익 관련성이 높은 직무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마주가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경우, 마사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마주의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마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자격시험 관련 최근 3년간 상세 현황

(기준: 누적기준)

근거법률	직업 등	인력현황(명)			시험·교육 운영기관	시험주기
		'21	'22	'23		
농어촌정비법	한지사* * 농지개량사업 실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및 보상 담당	-	-	-	'96년부터 미 실시* * 농지개량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 실시	
말산업육성법	말조련사	89	48	87	한국마사회	연 1회
	장제사	8	6	5		
	재활승마지도사	43	40	3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 전문가	25,204	28,028	30,670	한국숲해설가협회, (사)숲생태지도자협회 등 총 61개소 * 이론 및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	연 1~2회
산림문화휴양 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 지도사	2,012	2,510	2,737	대학 평생교육원 등 18개소	연 1회
산림보호법	나무의사	539	906	1,383	한국나무의사협회, 산림조항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연 1회 이상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임원	1,395	1,386	1,394	-	제31조(총회),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싸움소 주인	-	-	331 *23.6월 기준	-	-
축산계열화사업 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 사업자	208	230	253	-	제5조의3 (계열화사업의 등록)
축산법	수정사	14,660	12,805	13,983	각 시·도청 또는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연 1회
	가축거래상인	1,044	1,098	1,159	서울축산업협동조합, 대한양계협회 등 178개소	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한국마사회법	마주	1,011	1,043	1,043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24.8.23. 제출